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해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801

발의연월일: 2024. 11. 22.

발 의 자: 박해철 • 추미애 • 송옥주

김윤덕 • 안태준 • 염태영

강선우 • 박홍배 • 전재수

이재강 • 한민수 • 진성준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미세먼지는 인간의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위험 요소이자 전 세계적으로 사망 및 질병을 야기하는 주요한 요인 중 하나로 인정되고 있으며, 생태계의 균형성 유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연적·사회적 재난으로 인식되고 있음.

이에 현행법은 미세먼지 예측농도가 기준치 이상일 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및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도와 같은 미세먼지 저감 ·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, 어린이 ·노인 등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에 대한 마스크 보급, 공기 정화시설 설치 등 보다 세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마스크 보급, 공기 정화시설 설치 등의 지원 대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마스크 등 보건 장비를 보급하 고,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공기 정화시설 등을 지원하도록 하여 미세먼 지로부터 취약한 계층 및 저소득층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(안 제23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3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2항) 중 "보호대책 마련"을 "보호대책 마련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·방법"으로한다.
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지 농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보건용 마스크를 취약계층 및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소득층에게 무상으로 보급하여야 한다.
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, 유 치원, 학교, 경로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공기 정화시설 또는 미세먼지의 회피를 위한 시설의 설치·관리를 지원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3조(취약계층의 보호) ① (생	제23조(취약계층의 보호) ① (현
략)	행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
	세먼지 농도가 대통령령으로
	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
	보건용 마스크를 취약계층 및
	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
	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등 대
	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소득층에
	게 무상으로 보급하여야 한다.
<u><신 설></u>	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
	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어린
	이집, 유치원, 학교, 경로당 등
	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
	공기 정화시설 또는 미세먼지
	의 회피를 위한 시설의 설치ㆍ
	관리를 지원할 수 있다.
② 제1항에 따른 취약계층의	<u>(4)</u>
범위, 보호대책 마련 등에 필요	보호대책 마련과 제2항
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	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
다.	<u>• 방법</u>